

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
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
제 조 자	제 조 국가명	
	상호(회사명)	
면제대상 승강기안전부품	승강기안전부품명	모델명
	정격전압/전류 (해당하는 경우만 기재)	모델 구분
	수량	
	사용 장소	
	면제 구분 [] 부품안전인증 [] 설계심사 [] 안전성시험 [] 공장심사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

직인

비 고

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, 설계심사, 안전성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면제 됩니다.